

1. 개정이유

수익사업 승인 기준 등 타 보훈단체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정비(안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관련 문구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과 같이 타 보훈단체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각 보훈단체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정비(안 제32조)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승인 기준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중복사업 승인제한 관련하여 그 대상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명확히 하여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단체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정비(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등을 승인 기준이 아닌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에 명시하여, 각 조문의 특성에 더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함

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정비(안 제34조)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연장 기준’의 형태로 규정하는 등 해당 절차에 더 부합한 문구로 정비함

마.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정비(안 제37조 및 별표 4)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37조 관련), 시정조치 명령 위반의 세부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정조치 명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안 별표 4 관련)

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안 제44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관련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 요청의 경우 상위법의 문구상 하위법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각 단체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후 사용용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요로 사료되므로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등)”을“(수익사업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대해”를 “관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제30조제1항제3호 중 “지정”을 “지정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법 제66조제2항”으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때를”을 “경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 중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제31조의 제목 “(수익사업의 승인조건)”을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를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으로, “각”을 “수익사업 관련”으로, “또는 수익사업”을 “및 수익사업”으로, “조건”을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을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 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단계”를 각각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를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계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제33조제1항제4호 중 “수익사업의 수행자가”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3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를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수익사업의”를 “수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으로,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

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다)”을 “변경예정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정해야 한다”를 “결정하여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내주어야 한다”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
제34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69조제1항”을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으로, “있는지 여부”를 “없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통

보하고,”를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로, “내주어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미리”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 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직접 생산의 확인 신청 등)”을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의 직접 생산 또는 용역등의

직접 수행 여부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를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생산”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중 “확인 신청”을 “신청”으로,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춘”을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으로, “내주어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을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69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각 단체”를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단체에”를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에”로, “각 단체는”을 “수익사업운영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 단체”를 “소속 수

익사업운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단체”를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 단체”를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각 단체”를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각 단체”를 각각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을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1조·제32조에 따른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을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사용”을 “사용내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운영에 관한 확인”을 “운영”으로,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를 “서면조사, 현장조사”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3.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제43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을 “수익사업의 업종 및”

으로,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을 “따른 자료의 요청은”으로, “요청해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을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중 “정지 기간을”를 “기간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1)나) 중 “위반행위에 따른”을 “위반행위로 인한”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사소한”을 “위반행위가 사소한”으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위반행위에 따른”을 “위반행위로 인한”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나목·라목·사목 및 차목”을 “가목·나목·라목·사목·차목 및 타목”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를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5·18민주”를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유공자 관련 단체”를 “운영단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행번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련사항	대상구분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보훈번호	등록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출처 (학교명)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우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부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부상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신청	대부종류	[] 주택구입 [] 주택신축 [] 주택임차 [] 주택개량 [] 농토구입 [] 사업 [] 생활안정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주거상황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부대상자 결정	→	대부계약
신청인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신청인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부금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부상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신청종류	대부종류			대부금			
	대부금 사용목적			본인부담금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부동산 담보내역	소재지(지목, 면적)			현시가			
연대 보증인	성명			전화번호			
	보증구분	[] 재산 [] 소득 [] 직업 [] 기타		보증내역 (직장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보물의 종류에 따른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택구입대부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만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채무자	대부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1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2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내용	대부일	대부금액 원	
	거치기간 부터 까지	상환기간 부터 까지	
	상환원금 원	미상환원금 원	
	채납원금 원	채납이자 원	
연장신청	기간 부터 까지(일간)		
	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변경계약
신청인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통지			
		↓	계약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지급보증서

신청인	대상구분	보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지급보증 내역	지급보증기간	부터 까지
	지급보증금액	
	대부종류	
대부재산 표시	소재지(지목, 면적)	
매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급보증 내용	귀하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급보증기간 내에 언제든지 지급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대부 재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함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업종)	
	사업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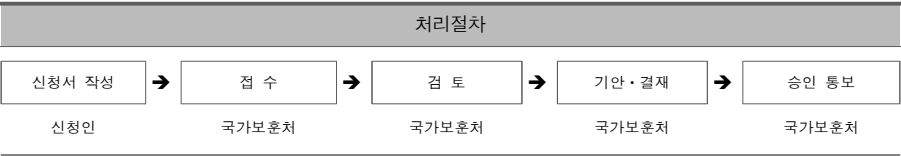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 지 부 명:
- 대 표 자: (생년월일)
- 주 소:
- 수익사업명:
- 사업구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익사업운영단체)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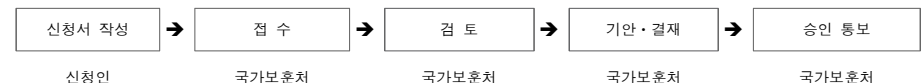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신고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①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② [] 사업계획의 내용 중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의 변경	
	③ []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수 국가보훈처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승인내용:
5.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승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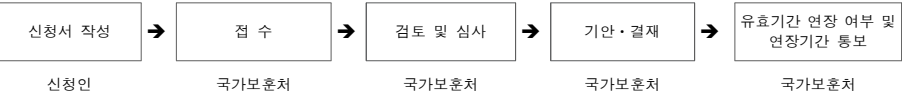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5. 승인일자: (승인번호:)
6. 사업장 소재지:
7. 유효기간 연장 기간: . . . ~ . . . (년 개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앞쪽)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 산 업 체 명:
3.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4. 대 표 자 성 명:
5. 소 재 지 (본사):
(사업장):
6. 유효 기 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의
에
고

국가보훈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27 -

(뒤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150g/㎡)]

– 28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등)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
① 법 제55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 ----- 관하여 ----- -----.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 ----- 지정내용----- ----- -----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	② 법 제66조제2항----- ----- 사항을 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2.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

<신 설>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 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각 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

경하려는 경우-----

경우를 --.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 중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삭 제>

려는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려는 경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조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 --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 --- 수익사업 관련 ----- -- 및 수익사업----- -----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업수행 능력, 투자규모, 다른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각 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64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삭 제>
--	---	--	---	--

②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각 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③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하는 서류				서류
<신 설>				6. ----- 수익사업 -----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 ----- ----- -----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다)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 ----- ----- -----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 ----- 변경예정일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 ----- ----- -----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결정하여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 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	⑤ ----- -----

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
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단체
에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

다음 각 호의-----

-----.

1.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실태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
간을 연장한다.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가보훈처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 신청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수익사업운영단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익사업운영단체에게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접생산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신청-----
-----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
----- 발급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④ 제3항과 관련된 수익사업운영단체,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

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는 때에는 해당 처분서에 관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⑥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⑦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지를 한 각 단체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 같은 조 제1항 -----

-----.

<삭 제>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에 -----

----- 수익사업운영단체는 -----
-----.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④ -----

-----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 -----
-----.

⑤ -----
----- 수익사업운영단체 -----

----- 그렇지 않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 -----.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① 수익사업운영단체 -----

-----.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각 단체</u> 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u>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u>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u>각 단체</u> 에 통보해야 한다.	③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실태조사) ① <u>국가보훈처</u> 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u>각 단체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제42조(실태조사) ① <u>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u>	1. <u>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u>

	<u>익사업의 운영 현황</u>
2. 제31조·제32조에 따른 승인 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2. <u>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u> ----- ----- --
<신 설>	3. <u>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u>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4. ----- <u>사용내역</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6. ----- <u>운영</u> ----- -- <u>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u>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u>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 <u>서면조사, 현장조사</u> ----- ----- <u>실시할 수 있다.</u>
제43조(정보공개) ① (생략)	제43조(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u>각 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u>	1. ----- ----- <u>수익사업의 업종</u> 및 -----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 의 운영 현황	-----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 지 처분 내역	2. ----- 또는 -- -----
③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 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정 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 른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삭 제>
제4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 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4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 선 매각 등) ① ----- ----- 따른 자료의 요청은 ----- ----- ----- 해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 분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자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삭 제>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	

위 및 이유	
3.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사용용도	
4.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등기·등록 등	
5.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에 관한 법적 분쟁	
6.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현황 및 상태	
③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 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처장에 게 보고해야 한다.	② ----- ---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처분 후 사용용도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 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 쟁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 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현황 및 상태	<삭 제>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신 설>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